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2013. 5. 13. 공포)
<u>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</u> <u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<u>제21조(과태료 부과 및 고발) ① (생략)</u> <u>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하고,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고발하며,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고발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의한 고발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.</u>	<u>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</u> <u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<u>제21조(과태료 부과 및 고발) ① (현행과 같음)</u> <u>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다. 다만, 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,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다.</u> <u>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,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다.</u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2013. 5. 13. 공포)
제11조(심사보고) ① (생략)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. 1. <u>시장</u>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.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	제11조(심사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시장 또는 교육감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<u>시장</u>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<u>시장</u>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12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 ----- <u>시장 또는 교육감</u> ----- ----- ----- --- <u>시장 또는 교육감</u> ----- -----. ② <u>시장 또는 교육감</u>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,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가 60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진행 상황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(2013. 5. 13. 공포)
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의장은 다음 <u>각호</u>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 1.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.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.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. <u>시장</u>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.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	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시장 또는 교육감</u>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